

19. 공동주택관리규칙중개정령(안)

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 제1999-148호 1999. 5. 1.

개정이유

단지내 시설물의 건축행위 등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.

주요골자

- 가. 노인정·입주자집회소 등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리시설을 증축(10% 범위내)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야하나, 입주자 대표회의 신고로써 증축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.
- 나. 종전에는 인근의 3개 단지, 1천세대를 공동관리할 수 있었으나, 5개단지, 3천세대까지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관리에 따른 관리비 절감을 도모.
- 다. 아파트단지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보수·교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「장기수선계획」의 수립기준을 종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에 정하여 운영하였으나, 그 근거를 법제화함.
- 라.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·도에 배정할 경우 종전에는 시험응시수수료를 국고에 예치한 후 다시 배정하였으나, 시·도의 수입증지로 대체함으로써 번거로운 행동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배정의 지연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.
- 마. 종전에는 주택관리사(보)가 3년마다 6일간의 교육을 받아야하나, 자격취득후 최초 취업시 1회에 한하여 3일간의 교육만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따른 경제적·시간적인 부담을 덜어줌.

주택회보